

예산총칙

2016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463,800,000	13,914,000
일반회계	457,400,000	13,722,000
일반회계	457,400,000	13,722,000
특별회계	6,400,000	192,000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	397,000	11,91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774,000	23,220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87,000	5,610
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	42,000	1,260
주차장특별회계	5,000,000	150,0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”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4,347,076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